

1. 폐지제정 이유

존속기한 도과로 인해 실효된 동 명칭의 기존 훈령(산업통상자원부 훈령 제240호)을 폐지제정하고, 변경된 부처 명칭을 반영하며,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표준안' 중 일부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기 실효된 훈령을 폐지하는 동시에, 동일·유사한 내용의 훈령을 제정
- 나. 존속기한(유효기간) 조항을 재검토기한으로 변경(안 제22조 개정)
- 다.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표준안' 반영(안 제2조, 제3조 등 개정)
- 라. 변경된 부처명 반영(훈령 제명 및 안 제1조 등 개정)
- 마. 이 외 경미한 자구 및 오·탈자의 수정, 모범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번호의 변경 등(안 제19조제2항제2호 등 개정)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 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산업통상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지침 폐지제정훈령안

산업통상자원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지침 전부를 다음과 같이 폐지제정한다.

제명 “산업통상자원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지침”을 “산업통상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지침”으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산업통상부에 신고(법 제6조에 따른 공익신고기관으로부터 이송 받은 경우 포함)되거나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송부 받은 공익신고의 접수·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익침해행위”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공익신고”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3. “공익신고등”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4.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5. “공익신고자등”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6. “불이익조치”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7. “내부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중 “**공무원**”을 “**산업통상부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신고**”를 “**지체 없이 신고**”로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산업통상부**”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법 제7조**”를 “**법 제8조**”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접수순서별로**”를 “**접수순서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부처 등의 공익신고 접수·처리 및 신분공개**”를 “**공익신고 접수·처리와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및 신고내용 관련 정보의 공개(이하 “신분공개”라 한다)**”로, “**조사기관의 조사**”를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조사·수사**”로 한다.

제10조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12조제2항 및 제3항 중 “**제17조제1항**”을 각각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산업통상부**”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익신고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전화로 안내할

수 있다.

제1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서**”를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신고자 보호**”를 “**공익신고자 보호**”로, “**신고자를**”을 “**공익신고자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제3항**”을 “**산업통상부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제4항**”으로, “**법 제9조제5항**”을 “**법 제9조제6항**”으로, “**법 제9조제7항**”을 “**법 제9조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경우**”를 “**경우 조사·수사절차에서**”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한다.

제15조제3항 중 “**이첩 받은**”을 “**이첩·송부 받은**”으로, “**이첩할**”을 “**이첩·송부할**”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에**”를 “**어느 하나에**”로, “**제15조제1항**”을 “**제14조제1항**”으로, “**제16조제1항**”을 “**제15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조사**”를 “**조사·수사**”로 한다.

제17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산업통상부**”로 한다.

제17조의3제1항 및 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산업통상부**”로 한다.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익신고자에 대한**”을 “**공익신고자등에 대한**”으로, “**공익신고자에게**”를 “**공익신고자등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호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의 준용이 필요한
경우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증대한”을 “증대에”로 한다.

제1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별지 제10호서식”을 “「공익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사무 운영지침」(국민권익위원회예규) 별지 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한다.

제19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소용된”을 “소요된”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손해”를 “손해(법 제2조제6호아목 및 자목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21조 중 “산업통상자원부는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른 공익신고 송부 등의”를 “산업통상부는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공익신고에 관한”으로, “외국인 등록번호”를 “외국인등록번호”로, “제출받아 처리”를 “처리”로 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7월 1일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 칙 <제000호, 2026.0.0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훈령의 폐지) 종전의 「산업통상자원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지침(산업통상자원부훈령 제240호, 2022.10.28.)」을 폐지한다.

[별지 제1호]

접수일자		접수번호		처리기간	120일
신고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직업		
피신고자	이름				
	소속		주소	알고 있는 경우 기재	
	직위	알고 있는 경우 기재	연락처	알고 있는 경우 기재	
공익신고 취지 및 이유					
공익신고 내용					
증거자료 등 첨부서류	별첨가능				
타기관 신고 및 쟁송 여부 등	[] 감사원,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동일한 내용을 신고한 사실 있음 (신고기관 : 신고일 : 조치결과 :) [] 민사·형사·행정소송 또는 행정심판 및 이에 준하는 절차 진행 중 또는 완료 ()				

20 년 간의

(인 또는 서명)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2호]

공 익 신 고 접 수 관 리 대 장

별지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3호]

접 수 증

접 수 번 호 20 -
접 수 일 자 20 년 월 일
신 고 제 목
신 고 자

위와 같이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신고사항을 접수하였습니다.

20 년 월 일

산업통상부 공익신고센터 접수담당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접 수 증

접 수 번 호 20 -
접 수 일 자 20 년 월 일
신 고 제 목
신 고 자

위와 같이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신고사항을 접수하였습니다.

20 년 월 일

산업통상부 공익신고센터 접수담당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6호]

접수경로			20 년 월 일 접수	접수자	공익신고 책임관
직접 접수	권익위 아침·송부	타기관 이송			
			20 - 00		

공 익 신 고 기 록

신고제목						
담당부서				담 당		
신고자 성명				피신고자성명		
처 리	조사·수사종료일	20 년 월 일		내 용		
	이 송 일	20 년 월 일		이송기관		
	결과통보일	20 년 월 일		대상자 (대상기관)		
신분공개 동의여부	산업통상부	수사기관		종결확인	담당	공익신고책임관
종 결 일	20 . . .					
보존기간	년 (20 . . . 까지)					

별지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7호]

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공익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보호·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 공익신고자의 신분비밀을 보장합니다.
 -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 등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공개한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는 신변보호조치를 권익위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동거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권익위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는 사용자 등에게 인사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등의 사용자 또는 인사권자는 공익신고자등이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요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 공익신고자는 보호조치를 권익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등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때에는 권익위에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는 불이익조치 금지를 권익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등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권익위에 불이익조치 금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는 책임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등은 신고와 관련한 형사, 징계 및 불리한 행정처분을 감면받을 수 있고, 신고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공익신고자 보상제도

구 분	지급 대상자	지 급 요 건
보상금	내부 공익신고자*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있는 경우(100만원 초과하는 벌금, 과징금 등) * 권익위 의무 지급
포상금	공익신고자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 권익위 재량
구조금	공익신고자 및 협조자, 그 친족 또는 동거인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치료, 이사, 쟁송, 임금손실 등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 권익위 의무 지급

*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자,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과 공사·용역계약 또는 그 밖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 등

※ 각급기관에서 지급받은 보·포상금이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보상금 지급 기준보다 적을 경우 권익위에 보상금 차액 지급 신청 가능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의 ‘알려드립니다 > 보호제도 안내 또는 보상·포상제도 안내’ 메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8호]

공익신고 사항 처리절차 유의사항

■ 우리 기관에서 이송한 공익신고 사항 처리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사항을 준수하여 공익신고가 적정하고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습니다.

1.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 조사·수사기관등은 조사·수사 중이거나 조사·수사 종료 후에도 공익신고자등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해서는 안됩니다.(법 제12조 제1항)

※ 공익신고자등이 동의한 경우에도 신고자의 인적사항등의 공개는 조사·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로 한정해야 합니다.

○ 공익신고자등이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야 합니다.(법 제11조 제1항)

※ 제7조(인적 사항의 기재 생략), 제9조(신원관리카드의 열람), 제10조(영상물 촬영), 제11조(증인 소환 및 신문의 특례 등), 제12조(소송진행의 협의 등)

2. 피신고자 및 신고내용 비공개

○ 공익신고를 접수한 기관 등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결과 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법 제10조 제5항)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산업통상자원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지침</u>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u>산업통상자원부에 신고 되는 공익신고의 접수·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u> <u>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산업통상자원부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u>	<u>산업통상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지침</u> 제1조(목적) ----- ----- ----- <u>산업통상부에 신고(법 제6조에 따른 공익신고기관으로부터 이송 받은 경우 포함) 되거나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송부 받은</u> ----- ----- <u>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u> <u>1. “공익침해행위”란 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u> <u>2. “공익신고”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u> <u>3. “공익신고등”이란 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u> <u>4.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4</u>

	<u>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u> <u>5. “공익신고자등”이란 법 제2</u> <u>조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u> <u>6. “불이익조치”란 법 제2조제6</u> <u>호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u> <u>7. “내부 공익신고자”란 법 제2</u> <u>조제7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u>
제3조(신고의무) <u>공무원</u> 은 그 직 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익침해행 위를 알게 된 때에는 <u>신고</u> 하여 야 한다.	제3조(신고의무) <u>산업통상부 및</u> <u>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하 “공</u> <u>무원”이라 한다)</u> --- <u>지체 없이</u> <u>신고</u> -----.
제4조(책무) ① <u>산업통상자원부</u> 는 공익침해행위의 예방과 피해의 확산 방지 및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 다. ② <u>산업통상자원부</u> 는 공익신고 의 접수·처리, 공익신고자 보 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예산 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책무) ① <u>산업통상부</u> ----- ----- ----- ----- --. ② <u>산업통상부</u> ----- ----- ----- ----- -----.
제7조(신고서식의 비치 등) ① 감 사담당관은 공익신고자의 편의 를 위하여 <u>별지 제1호 서식</u> 의 신고서를 비치하여 활용하도록 한다.	제7조(신고서식의 비치 등) ① -- ----- ----- <u>별지 제1호서식</u> ----- ----- -----.

② (생 략)

제8조(공익신고의 접수) ① 감사담당관은 공익신고자가 법 제7조에 따른 신고서를 방문·우편·인터넷·팩시밀리 등의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접수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9조(공익신고 접수절차) ① 감사담당관은 신고서를 접수하는 경우 접수순서별로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익신고접수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공익신고자가 방문하여 공익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부처 등의 공익신고 접수·처리 및 신분공개의 절차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조사기관의 조사 과정 등에 있어서 그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신분공개 동의 여부 확인서를 작성하게 한다.

제10조(대표자 선정 등) ① (생 략)

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② (현행과 같음)

제8조(공익신고의 접수) ① ----- 법 제8조

-----.

② (현행과 같음)

제9조(공익신고 접수절차) ① ---

--- 접수순서에 따라 -----

-----.

② -----
----- 공익신고 접수·처리와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및 신고내용 관련 정보의 공개(이하 “신분공개”라 한다)---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조사·수사 -----

-----.

제10조(대표자 선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1항의 공익신고를 대항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신고자의 위임장, 신고자 및 대항자의 신분증 사본 등 신고대항 권한을 증명할 서면을 제출받아야 한다.

1. (생략)

2. 신고자가 법인 등인 경우 그 임원 또는 직원

3.·4. (생략)

제12조(보완의 요구) ① (생략)

② 감사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보완요구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자가 그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1차에 한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도 보완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7조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③ 감사담당관은 공익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의 기재가 현

-----.

-----.

1. (현행과 같음)

2. <삭제>

3.·4. (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

제12조(보완의 요구) ① (현행과 같음)

② -----

----- 제16조제1항 -----
-----.

③ -----

저히 부실하여 인적사항을 확인
하거나 보완할 방법이 없는 경
우 제17조제1항에 따라 공익신
고를 종결할 수 있다.

제14조(공익신고의 조사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는 접수 또는 국
민권익위원회가 이첩·송부한
공익신고의 내용이 법령이나 그
위임에 의하여 지도·감독·규
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경우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는 공익신고
를 접수한 날 또는 공익신고를
이첩·송부받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처리하되, 공익신고 내
용의 보완 등을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
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
른 법령에서 처리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
른다.

③ 산업통상자원부는 직접 접수
한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를 끝
냈을 때에는 그 조사결과를 공

제16조제1항

제14조(공익신고의 조사 등) ①

산업통상부

② 산업통상부

③ 산업통상부

익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공
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및 별지 제8호서식의 공
익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를 첨부
한다. <단서 신설>

④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첩·송
부한 사건의 조사결과에 대해서
는 조사를 종료한 후 10일 이내
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
결과를 통보한다.

1. ~ 5. (생략)

⑤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자 보
호를 위해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이첩·송부한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를 대상으로 자
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협조요청을
하여야 한다.

⑥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민권익
위원회가 제3항에 따른 조사결
과에 대하여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공익침해행위의 확산 및

-----.

----. 다만, 공익신고자의 동의
가 있는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전
화로 안내할 수 있다.

④ -----

----- 문서(전자문서 포함)-----
-----.

1. ~ 5. (현행과 같음)

⑤ ----- 공익신고자
보호-----
----- 공익신고자-----

-----.

⑥ 산업통상부-----
----- 제4항-----
----- 법 제9조제6항-----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요구하거나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재조사를 요구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필요한 조치를 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그 조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⑦ 산업통상자원부는 제1항의 조사절차에서 공익신고자등이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삽입>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를 준용한다.

⑧ 공익신고자등이나 그 법정대리인이 제7항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신청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5조(공익신고의 이송 및 재이첩) ① ~ ② (생략)

③ 감사담당관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 받은 공익신고가 다른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법 제9조제8항

⑦ 산업통상부

조사·수사절차에서

⑧

산업통상부

제15조(공익신고의 이송 및 재이첩)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이첩·송부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의하여 다른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다시 공익신고를 이첩할 수 있다.

제16조(공익신고의 종결) ① 공익신고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5조제1항의 조사 또는 제16조제1항의 이송을 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고 종결할 수 있다.

1. ~ 5. (생략)

6.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7.·8. (생략)

② (생략)

제17조의2(징계의 감면) 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공직자의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공직자를 징계하는 경우 이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자에게 징계를 감경하거나 면제해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 이첩·송부-----.

제16조(공익신고의 종결) ① -----
----- 어느 하나
----- 제14조제1항-----
----- 제15조제1항-----

-----.

1. ~ 5. (현행과 같음)

6. -----
----- 조사·수사-----

7.·8.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의2(징계의 감면) ① 산업통상부 -----

-----.

② 산업통상부 -----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17조의3(불리한 처분의 감면)

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등에게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이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익신고자등에게 불리한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해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공익신고자 보호) 감사담당

기관은 공익신고 접수 또는 처리과정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공익신고자에게 구제절차를 안

-----.

③ (현행과 같음)

제17조의3(불리한 처분의 감면)

① 산업통상부 -----

-----.

② 산업통상부 -----

-----.

제18조(공익신고자 보호) -----

----- 공익신고자등 -----

----- 공익신고자등 -----

내하여야 한다.

<신 설>

1. ~ 7. (생 략)

제19조(보상금 지급신청 안내) ①

산업통상자원부는 당해 기관에
서 처리한 공익신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부과 등을 통하여 국가 또
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
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
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
정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
익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
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신고자가 법 제2조제7호의
내부 공익신고자에 해당하는 경
우에 한한다.

1. ~ 8.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신청 안내에는 다음 각 호의 신
청기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야 한다.

-----.

1. 법 제11조에 따른 「특정법
죄신고자 등 보호법」의 준용
이 필요한 경우

2. ~ 8. (현행 제1호부터 제7호
까지와 같음)

제19조(보상금 지급신청 안내) ①

산업통상부-----

-----.

1. ~ 8. (현행과 같음)

② -----

-----.

1. (생략)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한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

제19조의2(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①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추천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특별히 추천이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당해 기관에서 처리한 공익신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현저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자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자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추천서로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

1. ~ 5. (생략)
- ② 산업통상자원부는 제1항에 따라 추천하는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자에게 추천 사실을 미리 알리고 동의를 얻은 후 추천하여야 하고, 포상금 지급 대상

1. (현행과 같음)
2. -----
----- 증대에 -----

제19조의2(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① 산업통상부

「공
익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사무
운영지침」(국민권익위원회예
규) 별지 서식

1. ~ 5. (현행과 같음)
- ② 산업통상부

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19조의3(구조금 지급신청 안내)
산업통상자원부는 공익신고자
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
출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구
조금의 지급을 신청하도록 안내
하여야 한다.

1. (생략)
2. 전직·파견근무 등으로 소용
된 이사비용
- 3.·4. (생략)
5. 그 밖에 중대한 경제적 손해

제21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산
업통상자원부는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따른 공익신고 송부 등
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
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여권번호 또는 같은 조 제
4호에 따른 외국인 등록번호가

-----.

제19조의3(구조금 지급신청 안내)
산업통상부-----

-----.

1. (현행과 같음)
2. ----- 소요
된 -----
- 3.·4. (현행과 같음)
5. ----- 손해
(법 제2조제6호아목 및 자목
은 제외한다)

제21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산
업통상부는 시행령 제29조에 따
라 공익신고에 관한 -----

----- 외국인등록번호-----

포함된 자료를 <u>제출받아 처리</u>할 수 있다. <u>제22조(유효기간)</u> 이 훈령은 「<u>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u>」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5년 10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u>처리</u>----- -----. <u>제22조(재검토기한)</u> <u>산업통상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7월 1일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u>
---	--

산업통상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지침

폐지제정 2026. 0. 00 산업통상부훈령 제000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산업통상부에 신고(법 제6조에 따른 공익신고기관으로부터 이송 받은 경우 포함)되거나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송부 받은 공익신고의 접수·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익침해행위”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공익신고”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3. “공익신고등”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4.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5. “공익신고자등”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6. “불이익조치”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7. “내부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신고의무) 산업통상부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책무) ① **산업통상부**는 공익침해행위의 예방과 피해의 확산 방지 및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는 공익신고의 접수·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공익신고센터의 설치등) ① 공익신고의 접수·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감사담당관실에 공익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며, 감사담당관이 책임관이 된다.

② 감사담당관은 실무처리에 필요한 자를 담당자로 지정하여 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2장 공익신고의 접수

제6조(공익신고 상담) ① 공익신고에 대한 상담은 공익신고센터에서 하되 필요한 경우 그 외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담 시 공익신고자의 신분이나 신고내용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7조(신고서식의 비치 등) ① 감사담당관은 공익신고자의 편의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비치하여 활용하도록 한다.

② 문맹자 등 신고서를 직접 작성할 능력이 없는 공익신고자의 경우에는 공익신고센터 직원이 대리하여 작성하고, 내용을 읽어준 후 공익신고자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서로 접수한다.

제8조(공익신고의 접수) ① 감사담당관은 공익신고자가 **법 제8조**에 따

른 신고서를 방문·우편·인터넷·팩시밀리 등의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접수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공익신고가 아닌 일반 민원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9조(공익신고 접수절차) ① 감사담당관은 신고서를 접수하는 경우 **접수순서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익신고접수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공익신고자가 방문하여 공익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공익신고 접수·처리와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및 신고내용 관련 정보의 공개(이하 “신분공개”라 한다)**의 절차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조사·수사** 과정 등에 있어서 그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작성하게 한다.

제10조(대표자 선정 등) ① 감사담당관은 동일한 공익침해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그 중 1명을 대표신고자로 선정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대표신고자 선정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1항의 공익신고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신고자의 위임장, 신고자 및 대행자의 신분증 사본 등 신고대행 권한을 증명할 서면을

제출받아야 한다.

1. 신고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형제자매

2. <삭 제>

3. 변호사

4.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

제11조(출장 접수)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를 위하여 공익신고센터 직원의 현지출장을 요청한 경우에는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신고서를 받아 접수할 수 있다.

제12조(보완의 요구) ① 감사담당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신고서가 아래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일부 누락되었거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 공익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3. 공익침해행위 내용

4.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

5.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

② 감사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보완요구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자가 그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1차에 한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도 보완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③ 감사담당관은 공익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의 기재가 현저히 부실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하거나 보완할 방법이 없는 경우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제13조(공익신고기록) ① 감사담당관은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공익신고기록 표지, 신고서, 첨부 서류 순으로 편철하여 관리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제1항의 공익신고기록 표지를 작성함에 있어서 공익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감사담당관은 공익신고자등이 추가로 제출하는 서류나 그 신고사항에 관하여 추가로 작성되는 서류 등은 제1항의 공익신고기록에 날짜순으로 합철하여 관리한다.

④ 감사담당관은 공익신고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 외의 자가 제1항의 공익신고기록을 열람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접수되는 공익신고등에 대해서도 공익신고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 외의 자가 이를 열람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접근권한의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장 공익신고의 처리

제14조(공익신고의 조사 등) ① 산업통상부는 접수 또는 국민권익위원

회가 이첩·송부한 공익신고의 내용이 법령이나 그 위임에 의하여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경우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는 공익신고를 접수한 날 또는 공익신고를 이첩·송부 받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처리하되, 공익신고 내용의 보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처리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산업통상부**는 직접 접수한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를 끝냈을 때에는 그 조사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7호 서식의 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및 별지 제8호서식의 공익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를 첨부한다. **다만, 공익신고자의 동의를 있는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전화로 안내할 수 있다.**

④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첩·송부한 사건의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조사를 종료한 후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결과를 통보한다.

1. 형사처분 및 행정처분 등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처리 경위와 이유
2. 조사·수사 종료 후 처리 방향
3. 보상금 및 구조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그 사실
4.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요

지

5. 그 밖에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위원회 또는 공익신고자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⑤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해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이첩·송부한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공익신고자**를 대상으로 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협조요청을 하여야 한다.

⑥ **산업통상부**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제4항**에 따른 조사결과에 대하여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공익침해행위의 확산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요구하거나 **법 제9조제8항**에 따라 재조사를 요구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필요한 조치를 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그 조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⑦ **산업통상부**는 제1항의 조사절차에서 공익신고자등이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조사·수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를 준용한다.**

⑧ 공익신고자등이나 그 법정대리인이 제7항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신청한 경우 **산업통상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5조(공익신고의 이송 및 재이첩) ① 감사담당관은 접수된 공익신고가 부처 등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경우 관련 법률을 확인하여 해당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

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공익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및 신고내용 중 공익신고자임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직업, 소속, 담당업무 등의 내용을 익명처리하여 그 사본을 이송해야 한다.

③ 감사담당관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송부 받은 공익신고가 다른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의하여 다른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다시 공익신고를 이첩·송부할 수 있다.

제16조(공익신고의 종결) ① 공익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1항의 조사 또는 제15조제1항의 이송을 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고 종결할 수 있다.

1. 공익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2.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3. 공익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명자료 등에 대한 보완 요구를 2회 이상 받고도 보완 기간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4. 공익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5. 공익신고의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6.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수사가 시작되

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7.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와 관련성이 없는 경우

8. 공익침해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익신고를 이송하지 않거나 종결한 경우 그 사유를 포함하여 공익신고자에게 이송하지 않거나 종결한 사실을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4장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

제17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① 공무원은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아니 된다.

1. 공익신고자등의 성명·사진·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주소·근무처 등 인적사항

2.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항

② 공무원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 결과 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의2(징계의 감면) ① **산업통상부** 장관은 공직자의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공직자를 징계하는 경우 이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 장관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자에게 징계를 감경하거

나 면제해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공익신고등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공익신고자등은 다른 법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따른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17조의3(불리한 처분의 감면) ① **산업통상부** 장관은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등에게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이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 장관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익신고자등에게 불리한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해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공익신고자 보호) 감사담당관은 공익신고 접수 또는 처리과정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공익신고자등**에게 구제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의 준용이 필요한 경우
2. 법 제12조를 위반하여 비밀이 보장되지 않은 경우
3. 법 제13조에 따른 신변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
4. 법 제14조에 따른 책임의 감면 등이 필요한 경우

5.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경우
6. 법 제16조에 따른 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가 필요한 경우
7. 법 제17조에 따른 보호조치 신청이 필요한 경우
8. 법 제22조에 따른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이 필요한 경우

제19조(보상금 지급신청 안내) ① **산업통상부**는 당해 기관에서 처리한 공익신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을 통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신고자가 법 제2조제7호의 내부 공익신고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벌칙 또는 통고처분
2.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
3.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4. 과징금(인허가 등의 취소·정지 처분 등을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가 있는 경우에 인허가 등의 취소·정지 처분 등을 포함한다)의 부과
5.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
6. 부담금 또는 가산금 부과 등의 처분
7.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의 판결
8.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에 의한 환수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 안내에는 다음 각 호의 신청기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3년 이내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

제19조의2(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① 산업통상부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추천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특별히 추천이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당해 기관에서 처리한 공익신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현저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자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자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사무 운영지침」(국민권익위원회예규) 별지 서식의 추천서로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

1. 공익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기소유예, 형의 선고유예·집행유예 또는 형의 선고 등이 있는 경우
2. 시정명령 등 특정한 행위나 금지를 명하는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3. 공익침해행위 예방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4. 과태료, 과징금, 부담금 또는 가산금 등의 부과처분이 있는 경우(이 경우, 내부 공익신고자의 경우는 제외한다)

5. 사회재난의 예방 및 확산방지 등에 기여한 경우

② **산업통상부**는 제1항에 따라 추천하는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자에게 추천 사실을 미리 알리고 동의를 얻은 후 추천하여야 하고, 포상금 지급 대상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19조의3(구조금 지급신청 안내) **산업통상부**는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1. 육체적·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2. 전직·파견근무 등으로 **소요된** 이사비용
3.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한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
4.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5. 그 밖에 중대한 경제적 **손해(법 제2조제6호아목 및 자목은 제외한다)**

제20조(준용) ① 공익신고등의 상담·접수 및 처리,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 보상금의 지급신청 안내 등과 관련하여 이 규정과 다른 규정의 적용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② 다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공익신고자등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규정을 적용한다.

제5장 보칙

제21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산업통상부는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공익신고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여권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22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7월 1일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 칙 <제00호, 2026.0.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훈령의 폐지) 종전의 「산업통상자원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지침(산업통상자원부훈령 제240호, 2022.10.28.)」을 폐지한다.

[별지 제2호]

공 익 신 고 접 수 관 리 대 장

접 수 증

접 수 번 호 20 -

접 수 일 자 20 년 월 일

신 고 제 목

신 고 자

위 와 같 이 공 익 침 해 행 위 에 대 한 신 고 사 항 을 접 수 하 였 습 니 다 .

20 년 월 일

산업통상부 공익신고센터 접수담당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접 수 증

접 수 번 호 20 -

접 수 일 자 20 년 월 일

신 고 제 목

신 고 자

위 와 같 이 공 익 침 해 행 위 에 대 한 신 고 사 항 을 접 수 하 였 습 니 다 .

20 년 월 일

산업통상부 공익신고센터 접수담당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

신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공익신고	제목			
	접수일자		접수번호	
신분공개 동의여부	1. 산업통상부의 조사.확인과정 앞으로 귀하의 공익신고사건에 대하여 우리 기관에서 조사.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별도의 통지 없이 귀하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 [] 동의 [] 부동의			
	2. 수사기관의 수사과정 귀하의 신고사건이 수사기관에 고발되거나 검찰에 송치되어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귀하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이에 부동의 하시는 경우에는 귀하의 인적사항이나 귀하의 인적사항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 [] 동의 [] 부동의			

위 신고자 본인은 인적사항 등 신분공개 동의여부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인 또는 서명)

산 업 통 상 부 장 관 귀하

[별지 제6호]

접수경로			20 년 월 일 접수	접수자	공익신고 책임관
직접 접수	권익위 이접.송부	타기관 이송			
			20 - 00		

공 익 신 고 기 록

신고제목					
담당부서		담 당			
신고자 성명		피신고자성명			
처 리	조사.수사종료일	20 년 월 일	내 용		
	이 송 일	20 년 월 일	이송기관		
	결과통보일	20 년 월 일	대상자 (대상기관)		
신분공개 동의여부	산업통상부	수사기관	종결확인	담당	공익신고책임관
종 결 일	20 . . .				
보존기간	년 (20 . . . 까지)				

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공익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보호·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 공익신고자의 신분비밀을 보장합니다.
 -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 등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공개한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는 신변보호조치를 권익위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동거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권익위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는 사용자 등에게 인사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등의 사용자 또는 인사권자는 공익신고자등이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요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 공익신고자는 보호조치를 권익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등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때에는 권익위에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는 불이익조치 금지를 권익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등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권익위에 불이익조치 금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는 책임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등은 신고와 관련한 형사, 징계 및 불리한 행정처분을 감면받을 수 있고, 신고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공익신고자 보상제도

구 분	지급 대상자	지 급 요 건
보상금	내부 공익신고자*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있는 경우(100만원 초과하는 벌금, 과징금 등) * 권익위 의무 지급
포상금	공익신고자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 권익위 재량
구조금	공익신고자 및 협조자, 그 친족 또는 동거인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치료, 이사, 쟁송, 임금손실 등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 권익위 의무 지급

*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자,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과 공사·용역계약 또는 그 밖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 등
※ 각급기관에서 지급받은 보·포상금이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보상금 지급 기준보다 적을 경우 권익위에 보상금 차액 지급 신청 가능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의 ‘알려드립니다 > 보호제도 안내 또는 보상·포상제도 안내’ 메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공익신고 사항 처리절차 유의사항

■ 우리 기관에서 이송한 공익신고 사항 처리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사항을 준수하여 공익신고가 적정하고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습니다.

1.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 조사·수사기관등은 조사·수사 중이거나 조사·수사 종료 후에도 공익신고자등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해서는 안됩니다.(법 제12조 제1항)

※ 공익신고자등이 동의한 경우에도 신고자의 인적사항등의 공개는 조사·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로 한정해야 합니다.

○ 공익신고자등이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야 합니다.(법 제11조 제1항)

※ 제7조(인적 사항의 기재 생략), 제9조(신원관리카드의 열람), 제10조(영상물 촬영), 제11조(증인 소환 및 신문의 특례 등), 제12조(소송진행의 협의 등)

2. 피신고자 및 신고내용 비공개

○ 공익신고를 접수한 기관 등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결과 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법 제10조 제5항)